

수원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32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김찬문

피고, 항소인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울

담당변호사 윤현하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27.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가합14397 판결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14,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2021. 5.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8. 30.자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계약을 343,490,8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43,490,8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95,472,000원 및 그 중 395,42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44,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8. 30.자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계약을 395,47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95,4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4. 용인시 기흥구 G 대 2,25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대표이사인 H 주식회사(변경 전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는 2015. 12. 30. J 임야 1,57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원고는 2016년경

용인시장으로부터 K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 소유 토지에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용인시 기흥구 D 도로 648㎡와 E 대 1,557㎡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데, 위 D 도로 648㎡ 중 81/648 지분(이하 'D 토지'라 한다)과 위 E 대 1,557㎡(이하 'E 토지'라 하고, D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L은 2017. 4. 6. 위 E 토지를 대지로 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L은 2017. 6. 2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2017. 8. 11.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F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서 이루어진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하던 건축사 M는 2017. 12. 8. F의 E 토지에 대한 흠막이공사 결과 원고 소유 토지가 훼손되었으니 이를 원상복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의 감리의견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로부터 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N은 토공사가 이루어진 E 토지의 흠막이면의 안정성이 우려되어 공사착공이 불가능하다면서 2018. 3. 14. 원고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의 신축공사 사업권을 양수하고, 2018. 3.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 B는 2018. 4. 12. 원고에게 E 토지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가 미완성되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 4. 20.까지 위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 일정을 통보하여 2018. 6. 2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되 위 사항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2018. 4. 30.까지 현재 E 토지에 설치된 옹벽 가시설을 철거하기로 약정하며, 위 약정 불이행시 원고가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그 비용 등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2018. 4. 12.자 확약서'라 한다).

바. 피고 B는 2018. 4. 20.까지 원고에게 E 토지 옹벽 보강공사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2018. 4. 30.까지도 위 옹벽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B는 2018. 5. 1. 원고에게, 원고가 직접 E 토지에서 옹벽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비용을 청구하면 F과 피고 B이 연대하여 위 공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불이행 손해배상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2018. 5. 1.자 확약서’라 한다).

사. 이후 피고 B은 2018. 5. 31. 원고에게 문제된 E 토지 경계 부분에 피고 B이 2018. 6. 7.부터 2018. 6. 21.까지 건축매트 및 옹벽 골조공사를 하되 위 공사가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임의대로 옹벽공사를 직접 진행하여도 그 공사비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2018. 5. 31.자 확약서’라 하고, 앞서 본 2018. 4. 12.자 확약서와 2018. 5. 1.자 확약서와 통틀어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아. 원고는 2018. 6. 7. 피고 B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공사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 원고가 직접 E 토지에서 옹벽 골조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통지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

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2018. 8. 3. 설립되자, 피고 B은 2018.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차. O는 2018. 11. 6. 이 사건 옹벽공사를 완성하여 원고에게 395,428,0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카. 한편, 원고와 H은 2021. 4. 7. H의 피고 B에 대한 E 토지의 옹벽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 및 통지권한위임장을 작성하였고, 2021. 4. 19. 이 법원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준비서면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4, 21, 25, 3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395,472,0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옹벽공사를 완성한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 395,4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옹벽 공사의 도급인이 H이고,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청구권이 H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H의 위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청구권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19, 26,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와 관련하여 2018. 4. 2.자 확약서에는 'K', 2018. 5. 1.자 및 2018. 5. 31.자 확약서에는 각 'J 토지, G 토지 소유자'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옹벽공사는 원고 및 H이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원고와 H 소유의 토지에 K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옹벽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O가 H 명의로 관련 견적서를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옹벽공사 착공 당시 피고 B에게 교부된 공사 시작 통보서에는 발신인으로 원고와 H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대표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공사대금의 일부는 원고 명의로 O에 송금된 점, ③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용인시 기흥구 중동 J 및 G의 소유자인 원고와 H에게 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옹벽공사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H은 피고 B과 사이에 각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요 내역에 따라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H과 함께 이 사건 옹벽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이상 원고도 자신 소유 토지의 비율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H의 이 사건 옹벽공사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비용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약정에 따른 채권자 및 H 소유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 B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2) 이 사건 옹벽공사의 공사대금 범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옹벽공사의 공사대금은

314,347,000원{= 285,770,000원<sup>1)</sup>} (= ① 영구앵커옹벽 절토부 198,239,880원 + ② 상부 보강토 옹벽 성토부 87,530,743원) + 부가가치세 28,577,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O는 2018. 5. 31. 및 2018. 11. 6. 각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견적서의 품명에는 ‘① 영구앵커옹벽 절토부, ② 상부 보강토 옹벽 성토부, ③ 추가 보강토 옹벽 절토부’ 3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2018. 11. 6.자 견적서의 각 금액은 ① 198,239,880원, ② 87,530,743원, ③ 73,709,84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항목을 합산한 금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395,42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O 대표자 P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항목 중 ③ 추가 보강토 옹벽 항목은 직원이 실수를 해서 잘못 넣은 것으로 H이 의뢰한 다른 옹벽공사 내역이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원고는 위 ①, ② 항목 이외에 추가로 73,750,000원 상당의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보강공사’라 한다)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8. 12.경 작성된 이 사건 옹벽에 관한 단기 안정성 검토보고서(을 제8호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의 판넬 상부가 벌어져 있고, 이는 판넬을 받쳐줄 지지대가 없어 침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P은 이 사건 보강공사에 관하여 ‘밑에 앵커부분에 까맣게 ㄷ자 빔을 2줄 대놔는데 원래 애초에는 생각을 안했다가 저 위에 보강토 옹벽이 올라가다보니 하중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밑에서 보강토 공사를 하기 전에 보강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사는 이 사건 옹벽공사 과정에서 판넬의 절토부 고정 작업이 부실하게 되어 이에 대한 보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사 내역까지 피고 B이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옹벽공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O 작성의 2020. 1. 11.자 청구서(갑 제41호증)의 기재(이 사건 보강공사에 따라

73,750,000원을 청구한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옹벽공사가 2018. 9. 내지 2018.

10.경 완성되었다는 위 P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 금원 상당의 이 사건 보강공사를 하였다는 당심 증인 P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보강공사에 위 금원 상당이 소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3)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한 대금 314,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0. 6.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H의 이 사건 채권 양도는 오로지 이 사건 소의 진행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모든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H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소유 토지에서 건물신축공사를 하고 있었고, 위 공사의 과정에서 피고 B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옹벽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피고 B도 이 사건 옹벽공사의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H 모두에게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점, ②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H은 동일한 채권발생 원인을 기초로 하는 채권자로서 다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H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해서, 원고가 H와 달리 피고 B에 대한 새로운 공격방법을 가지게 된다거나 피고 B이 채권양도인인 H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가지던 인적 항변이 단절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④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 관련 채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공사 시작을 통지하고, 공사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옹벽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해 왔기 때문이지 단지 이 사건 소송만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은 2018. 5. 31.자 확약서를 통해 원고가 2018. 6. 7.까지 이 사건 옹벽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옹벽공사는 위 기한 이후에 착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5. 31.자 확약서에 ‘원고가 2018. 6. 7. E 공사 미착수시 기 서류는 폐기함, 쌍방 모두 해당됨’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31. O로부터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 O 대표자 P은 2018. 6. 초경 원고와 공사계약 후 구조물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8. 6. 7. 피고 B에게 이 사건 옹벽공사 시작을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7.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옹벽공사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은 문제된 E 토지 옹벽 부분에 ‘건축매트기초공사 및 옹벽골조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한 이 사건 옹벽공사는 경계면 하단에 C콘크리트 조립식 블록을 3단으로 쌓은 후 상부에 보강토로 경계 외벽 흙막이 가시설을 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공사는 이 사건 확약서가 예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4. 12.자 확약서에 ‘원고가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그 비용 등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5. 31.자 확약서에도 ‘원고가 임의대로 옹벽공사를 직접 진행하여도 공사비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한 이 사건 옹벽공사의 공법이나 비용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7면 제19행부터 제15면 제8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2면 제1행부터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피고 B의 공동담보가액은 적극재산가액의 합계 1,108,521,177원(= 780,521,177원 + 328,000,000원)에서 소극재산가액의 합계 900,919,940원(= 314,347,000원 + 420,000,000원 + 150,000,000원 + 16,283,290원 + 225,280원 + 64,370원)을 공제한 207,601,237원(= 1,108,521,177원 - 900,919,940원)이라 할 것인데, 780,521,177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따라 피고 B은 소극재산가액이 적극재산가액을 572,919,940원(= 780,521,177원 - 207,601,237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제14면 제9행의 “2018. 2. 1.”을 “2019. 2. 1.”로 고친다.

○ 제14면 제21행부터 제15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이 780,521,177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금 314,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1. 4.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9,143,842원{= 314,347,000원 × (1년 + 199일/365일) × 6%, 원미만 버림}의 합계 343,490,842원(= 314,347,000원 + 29,143,842원)임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는 위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 있는 피보전채권액 343,490,842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343,490,8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C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취소되는 범위의 343,490,84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취소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연경, 판사 정진화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용인시 기흥구 D 도로 648㎡ 중 1/8 지분
2. 용인시 기흥구 E 대 1,557㎡, 끝.

1) 기존 견적서 산정 내역에 따라 1,000미만을 절삭하여 산정한다.